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5. . . (제 회)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는 등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원화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함으로써 소비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2월 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6호) 중 “물품가격”을 “2025년 6월 30일까지 물품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를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개별가격”을 “개별가격의 합 중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유홍행위”를 “유홍음식행위”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유류공급명세서”를 “면세용도 급유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별표 1 제6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
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
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

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
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
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하여 확인을 받으면 2025년 1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
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
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
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
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2월 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4. (생략)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2월 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삭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제> |

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5. -----
-- 2025년 6월 30일까지 물품가격-----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개별가격의 합 중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 -----

-----.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제14조의2(유통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통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유통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생략)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유통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1. ----- 유통음식행위 -----
-----.

2. (현행과 같음)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업자등록증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4. 5. (생략)

③ ~ ⑥ (생략)

제21조(별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별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 면세용도 급유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

4.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별실 승인신청) ① -----

-----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

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6. (생략)

-----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
| 연 락 처 | (044) 215 - 4331 |